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2-6116-838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 자격요건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5.05.08.(목)	2025.07.01.(화)	2025.07.08.(화)	2025.07.11.(금)	2025.07.15.(화)~2025.07.16.(수)	2025.07.17.(목)

1 공통 유의사항

(분양문의 : 02-6116-8383)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01.(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 번호는 **202591010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08.(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164**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08.(화)	2025.07.11.(금)	2025.07.15.(화)~2025.07.16.(수)	2025.07.17.(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운영시간(10:00~17:00) - 건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 2025.05.27.(화)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동 / 총 983세대 / 일반분양분 576세대 중 잔여 무순위(사후) 대상 39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최초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인허가 기준주택형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101	01	059.9969B	59B	59B	18	101동	209호, 609호, 910호, 1210호, 1910호
						103동	203호
						104동	201호
						106동	905호, 1605호
						107동	303호, 1202호, 1804호
						108동	204호, 803호, 1303호, 1403호, 1504호
						109동	306호
	02	059.9689D	59D	59D	1	108동	401호
	03	084.9349A	84A	84A	19	102동	302호, 401호, 1001호
						103동	404호, 605호
						104동	503호, 604호, 704호, 803호, 904호
						105동	401호, 804호, 904호
						106동	301호, 501호, 502호, 701호
						109동	302호, 501호
	04	084.8751C	84C	84B-2	1	105동	702호
	합 계				39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84B-1, 84B-2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 단위세대 표기 84B, 84C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타입 중 인허가 도서상 84B-1 주택형은 84B형, 84B-2 주택형은 84C형으로 구분하여 분양예정이오니 계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84A 타입 내부 구조 중 침실2, 침실3의 구조가 타 세대와 상이할 수 있는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는 공간 배치, 벽체 위치, 창문 또는 불박이장 위치 등에 해당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사금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중으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일부 세대(102동 1001호)의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102동 1001호)는 계약 전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으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 표 기)	공급 세대 수	해당(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 급 금 액			계 약 금 (10%)		중 도 금 (60%)						잔 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1개월내)	1회(10%) 2025-11-30	2회(10%) 2026-05-31	3회(10%) 2026-10-31	4회(10%) 2027-03-31	5회(10%) 2027-08-31	6회(10%) 2028-01-31	입주자정일
59B	18	101동 9호, 10호 103동 3호 104동 1호 106동 5호 107동 2호, 3호, 4호 108동 3호, 4호 109동 6호	2층	4	466,047,000	456,453,000	922,500,000	10,000,000	8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276,750,000
			3층	2	470,947,440	461,252,560	932,200,000	10,000,000	8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279,660,000
			5-10층	4	480,798,840	470,901,160	951,700,000	10,000,000	8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285,510,000
			11-20층	8	485,699,280	475,700,720	961,400,000	10,000,000	8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288,420,000
59D	1	108동 1호	4층	1	501,259,440	490,940,560	992,200,000	10,000,000	8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297,660,000
84A	19	102동 1호, 2호 103동 4호, 5호 104동 3호, 4호 105동 1호, 4호 106동 1호, 2호 109동 1호, 2호	3층	3	613,919,040	601,280,960	1,215,200,000	10,000,000	11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364,560,000
			4층	3	620,335,080	607,564,920	1,227,900,000	10,000,000	11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368,370,000
			5-10층	13	626,751,120	613,848,880	1,240,600,000	10,000,000	11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372,180,000
84C	1	105동 2호	5-10층	1	607,856,640	595,343,360	1,203,200,000	10,000,000	11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360,960,000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757101-04-191355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명)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세대별 가상 계좌번호 부여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명)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중도금 및 잔금 : 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KB국민은행, 757101-04-191355,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명))으로 관리됩니다.
-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공급 계약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동시에 진행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59B	59D	84A	84C
금액	11,670,000	15,090,000	13,370,000	13,690,000

1) 라이프업 스타일링

■ 현관중문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현관중문	전 타입	미설치	3연동 현관 중문	59B	1,010,000
				59D/84A/84C	1,020,000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3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설치품목	금 액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 타입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 (섬유판)	59B	벽 : 흡착벽지 바닥 : 광폭 강마루(섬유판)	1,380,000	벽 : 흡착벽지 바닥 : 원목마루	8,350,000	
			59D		1,600,000		9,370,000	
			84A		1,880,000		11,100,000	
			84C		1,770,000		10,870,000	

■ 조명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조명 특화	전 타입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59B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890,000	
			59D		890,000	
			84A	거실, 침실2,3,알파룸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1,210,000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980,000	주방 특화 옵션 선택시
			84C	거실, 침실2,3,알파룸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1,170,000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950,000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 시

2) 라이프업 수납

■ 현관수납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현관 수납특화	59B	기본 신발장	59B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	940,000	
	59D		59D	은경판넬	980,000	
	84A	기본 신발장	84A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	970,000	
	84C	현관창고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84C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930,000	

■ 드레스룸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드레스룸 특화	59D	파우더장+드레스룸(가구도어+폴대형시스템선반)	59D	드레스룸 통합 : 포켓도어+디자인 시스템 선반+천장형 제습기	3,390,000	
	84A		84A		2,240,000	
	84C		84C		2,610,000	

■ 침실3 수납특화 (대형 드레스룸)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침실3 수납특화	59B	침실3	59B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 + 천장형 제습기	4,870,000	

■ 알파룸 수납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알파룸 수납특화	84C	알파룸	84C	침실2 드레스룸+복도 팬트리(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	3,650,000	

■ 침실2/3 붙박이장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침실2/3 붙박이장	전타입	미설치	59B	침실 붙박이장 1개소	1,170,000	설치 위치: 침실2
			59D		1,170,000	설치 위치: 침실3
			84A		1,170,000	설치 위치: 침실2
			84C		1,170,000	*발코니 변화구간 세대 - 침실3 설치 위치: 침실2

3) 라이프업 키친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 스타일링 특화	전타입	주방 벽 : 타일 (300*600)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59B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2,090,000	
			59D		2,180,000	
			84A		2,170,000	
			84C		2,060,000	

■ 주방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특화	59B	평면 : 주방 주방 벽 : 타일 (300*600)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59B	평면 : 주방+장식장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3,920,000	
	84A	평면 : 주방+알파룸 주방 벽 : 타일 (300*600)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84A	평면 : 주방+주방팬트리+장식장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7,000,000	
	84C	평면 : 주방 주방 벽 : 타일 (300*600)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84C	평면 : 주방+장식장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3,450,000	

■ 주방 냉장고장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냉장고장	59B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59B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5,390,000	
	59D		59D		5,380,000	
	84A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84A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김치) + 키큰장	5,150,000	
	84C		84C		5,260,000	

4) 라이프업 바스

■ 욕실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3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설치품목	금 액	
욕실특화	전 타입	벽 : 타일(300*600/국산) 바닥 : 타일(300*300/국산) 벽붙이형 세면대	59B	벽 : 타일(600*1200/외산) 바닥 : 타일(300*600/외산)	2,900,000	벽 : 타일(600*600/외산) 바닥 : 타일(300*300/외산)	2,640,000	
			59D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외산 세면대	2,900,000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외산 세면대	2,640,000	
			84A	수전,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 특화	2,950,000	수전,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 특화	2,690,000	
			84C	전자비데 1개소	2,950,000	전자비데 1개소	2,690,000	

5) 가전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인덕션	전타입	가스쿠포 3구 (하츠 / SSGC-3605SABH)	인덕션 3구 (쿠포/ CEN-IF3A0NBA)	650,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수납장	일반형 (삼성전자 / DW80F73Y1UEW)	1,100,000	
			고급형 (삼성전자 / DW80F75K1UAP)	1,400,000	
전기오븐	전타입	수납장	일반형 (LG전자 / MZ385EBT1)	450,000	
			고급형 (LG전자 / MZ941CLCAT)	850,000	
욕실복합 환풍기	전타입	미설치	2개소 (힘펠 / FHD3-C150P MT)	1,200,000	2대(욕실1, 욕실2)
드레스룸제습기	59D / 84A,C	미설치	코스텔 / CDD-600B	780,000	

6)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 LG전자)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옵션안	장비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 고
59B	1안	2대	거실 + 침실1	2,800,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시
	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4,100,000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59D	1안	2대	거실 + 침실1	2,80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84A	1안	2대	거실 + 침실1	3,200,000	주방 특화 선택시
	2안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4,400,000	
	3-1안	5대	거실 + 알파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6,900,000	주방 특화 선택시
	3-2안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6,900,000	
84C	1안	2대	거실 + 침실1	3,200,000	알파룸 수납 선택시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3안	5대	거실 + 알파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6,900,000	

7) 시스템 청정환기 특화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옵션안	장비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 고
59B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시
	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2,960,000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59D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84A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주방특화 선택시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3안	5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4,920,000	
84C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안내

(단위: 원, VAT 포함)

계좌구분	납부 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주택형별 정액제)	7,000,000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에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총액의 10%)	KB국민은행	757101-04-191397	(주)대우건설(외1사)
잔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총 대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KB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주)대우건설(외1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KB국민은행, 757101-04-191397, (주)대우건설(외1사)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 계약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동시에 진행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 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11.(금) ~ 2025.07.20(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7.1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 2025.07.15.(화) ~ 2025.07.16.(수) 10:00~17:00

- 계약시 구비서류 :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01.(화) 이후 발급분에 한 함)

구 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 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 가 제출 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위임장	당첨자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 관련 지자체 공문,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예비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일시 : 2025.07.17.(목) 10:00~17:00

- 계약시 구비서류 :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01(화))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서	• 견본주택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공급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 - 표 하단의 인지세 납부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구매 및 출력
	자격확인서류 일체	• 무순위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신분증, 인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7.01.(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 계약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시 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 증서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유의사항

- 본 단지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3종에 해당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 시점의 초·중·고등학교 배정은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학교 배정 및 통학거리 등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 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 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단지 내 조경계획 및 공용부계획, 부대시설 계획, 커뮤니티 시설계획 등은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소방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따른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때, “을”은 “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세대창고는 상품성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동의서가 징구될 예정이며, 수분양자의 동의 후 인허가를 거쳐 변경 될 예정입니다. 세대창고는 각 동마다 설치되는 것이 니라 101동 PIT층 작은도서관옆에 통합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별로 이동거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위치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계약의 목적물인 본 공동주택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 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겠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 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근저당설정비용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본인이 인지했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미납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공사
상 호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33, 4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법인등록번호	250171-0030591	110111-2137895	110111-215301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05.08.(목))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 ☎02-6116-8383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